

##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된 이후 2년여만에 입법화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전 구조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전기사업허가처리지침 등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이 되는 두 법안을 시리즈로 나누어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회사"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할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인가)** ① 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신설회사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신설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절차의 간소화)** ①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공사의 이사는 상법 제5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부터 6월간 동법 제530조의7제1항 각호의 서류를 한국전력공사의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④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의 결의를 위하여 동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지기간의 초일 또는 기준일의 7일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할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공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전기사업의 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인 때에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허가·승인·지정·신고·검사·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면제)** 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분할계획에 따라 승계한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제9조(자기전기통신설비의 사용특례)** 신설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립

등기일부터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통신기  
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  
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고용계약의 승계)**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  
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 ③ (신설회사의 민영화시기) 민영화의 차질 없는 추진  
을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
- ④ (인가의 의제)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전력공사가 상  
법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얻은 분할은 그 승인일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전기사업법 제8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  
항 후단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은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이를  
전기사업법 제54조의3제2항으로 본다.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체도를 확립하  
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  
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  
업 및 전기판매사업을 말한다.
-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  
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  
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  
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  
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나. 일반용전기설비
  - 다. 자가용전기설비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 핵연료

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정도
2. 전기의 보급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허가 등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동일인에게는 2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 ⑤ 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 제1항·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한한다)중 전기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법인

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업 무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같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 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요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 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

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자를 제외한다)
-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배전사업자
-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 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4.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가 끝난 후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2. 내부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유형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30조(손실보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